

『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흥난이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대통령령인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 등을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~제11조)
-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~제18조)
-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(안 제19조~제25조)
-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(안 제26조~제27조)
-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타사항(안 제28조~제4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,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동강령 표준안이 통보되어 「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,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